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완화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 완화(안 제29조제2항[별표 2])

- 1)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던 것을 ‘최근 3년간’으로 완화
- 2)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개별기준을 2차 위반 시 ‘지정취소’에서 3차 위반 시 ‘지정취소’ 하도록 기준 완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최근 1년간”을 “최근 3년간”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3호			
1)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2)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재 히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3)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4)교육생을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 를 한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지정취소 등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u>최근 1년간</u>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 ----- <u>최근 3년간</u> ----- ----- ----- ----- -----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지정 취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나.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다.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다.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1)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시정 명령	지정 취소	1)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시정 명령	지정 취소	
2)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명령	지정 취소	2)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명령	지정 취소	
3)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시정 명령	<u>지정 취소</u>	3)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시정 명령	<u>시정 명령</u>	<u>지정 취소</u>
4) 교육생을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시정 명령	<u>지정 취소</u>	4)교육생을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시정 명령	<u>시정 명령</u>	<u>지정 취소</u>

〈 의안 소관 부서명 〉

성평등가족부 경제활동촉진과	
연 락 처	(02) 2100 - 6622